公有財産管理計劃承認要請案
審 査 報 告 書

1994年 10月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査 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4年 10月 8日

나. 提 出 者 : 光州直轄市 西區 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4年 10月 11日

라. 上程日字 : 1994年 10月 18日

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4年 10月 18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會計課長 魏 勳)

가. 提案 事由

○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거 취득·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

○ 동 규정에 따라 '94년도에 취득하여야할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(취득)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.

나. 財産取得承認要請 內譯

(1)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(1개동 60평 규모)

○ 어린이놀이터 조성 예정 부지는 양3동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대부분 영세가정이 거주한 지역으로 어린이를 위한 휴식공간이 없어 어린이놀이터

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

○ 취득대상 부지는 서구 양3동 386-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로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 결정하겠음.

(2)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(1개동) 400㎡(121평)

○ 맞벌이부부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조기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제공하여 아동복지증진에 도모코자함이며

○ 취득대상 부지는 화정2동 관내인 주월동 886-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로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협의결정하겠음.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 : 趙澤龍)

○ 양 3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취득 승인요청의 건은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영세가정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

○ 화정 2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승인요청의 건은 맞벌이 부부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아동복지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 2건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심사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대로 의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

취 득 승 인 재 산 내 역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소 재 지	면적	소요예산	취득시기	취득재산 소 유 자	비 고
계	2개소	598	400,000			
어린이 놀이터 조성부지 매 입	양3동 386-2	198	150,000	'94. 하반기	전남강진 도암향촌 664 박두례	
어린이집 건 립 부지매입	주월동 886-1	400 (예상)	250,000	"	주월동 886-1 조평원	화정2동관내